



창 원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

1.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489호(2023. 1. 27.) 및 경남도 노인복지과-1814호(2023.1.30.)와 관련됩니다.
2.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불임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」 과 같이 개정되오니, 관내시설 등에 **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등을 신속하게 안내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각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관리 상황을 지도·점검하여 주시고, 고위험군, 유증상자, 3밀 시설 등의 착용 권고사항도 지속 안내·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사항

- 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) 실내 전체 →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
※입소형 시설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
-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<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>

-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-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-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※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,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(사전 협의 필요),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

- (기타 내용 정비)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

나. 시행: 2023. 1. 30.(월) 0시부터 시행

- 붙임 1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
2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 FAQ. 끝.

창 원 시 장 인



수신자 의창구청장(가정복지과장), 성산구청장(가정복지과장), 마산회원구청장(가정복지과장), 진해구청장(가정복지과장), 마산합포구청장(가정복지과장)

주무관

남순연

주무관

최길순

노인장애인과 전결 2023. 1. 30.

장

윤성주

협조자

시행 노인장애인과-4913

(2023. 1. 30.)

접수 가정복지과-3009

(2023. 1. 30.)

우 515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,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/ <http://www.changwon.go.kr>

전화번호 055-225-3926

팩스번호 055-225-4730

/ joy713@korea.kr

/ 대국민 공개